

「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일자 2022. . .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11조제2항의 일부 조문 변경

「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설>	제11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생 략) ② 위촉직 위원 <u>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1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<u>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